

2022. 04. 25(월). 10:00
제2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

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공동브랜드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격 기준마련 (안 제4조)
- 다. 공동브랜드 위원회 심의 및 심의 사항 구체화 (안 제6조)
- 라.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심의 생략 기준마련 (안 제7조)
- 마.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바.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·사후관리·사용중지·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)
- 사.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 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가. 현행조례 : 덧붙임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여유농(상표) 일부 변경과 우수농산물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4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대상자 및 자격 기준 요건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시 승인절차를 강화하였고, 안 제6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용, 사후관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, 안 제8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16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전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된다.
- 다만, 남양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수농산물을 유통,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개척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2022년 4월 22일

산업건설전문위원 이명구

□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며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남양주시가 소유한 유기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산물”이란 남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 되는 「농어업,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.
2. “공동브랜드”(이하 “상표”라 한다)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.
3. “농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.
4. “생산자단체”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5. “사용권”이란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)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하여 적용하며, 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신청대상자) ① 신청대상자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, 영농작목반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기농 가공업자로 한다.

제5조(사용권의 신청) ①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1.06>

- 1.<삭제 2014.11.06>
- 2.<삭제 2014.11.06>
- 3.<삭제 2014.11.06>

② 전단이나 간행물·간판·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1.06.>

제6조(사용권의 승인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 승인을 할 경우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 승인 번호를 매기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권 승인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③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(신청인 본인에 한한다)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,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거나,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변경신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 명의변경
2.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
3.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
4. 그 밖에 주소 등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

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사용권 승인서의 분실·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) ① 상표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상표의 크기, 색상,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, 포장재의 색상,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③ 상표 사용은 날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상표 사용의 책임) ① 상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과 관련하여 반품,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상표 승인품목을 사후 관리할 때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면 생산 현장, 출하, 선별,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「상표법」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.

제11조(상표사용 중지) ① 시장은 상표 사용자가 제9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0조제1항의 보완, 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② 상표사용의 중지 처분을 받은 상표 사용자는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 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용권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권을 승인받은 경우
2.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 상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자진 폐지(휴지)신고 하지 않은 경우
3. 사용권을 받은 자가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 생산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하였을 경우
4. 제11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
5. 친환경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경우
6.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

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, 유인된 상표는 폐기·말소하여야 한다.

③ 상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상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13조(의견청취)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보조금의 지원 등) 시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, 영농작목반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기농 가공업자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표의 홍보활동 사업
2. 포장재 지원사업
3. 상표사용 농산물의 생산, 유통, 가공, 판매 등 지원사업
4. 교육 및 연수사업

제15조(홍보 및 교육 등) ① 시장은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, 유통종사자,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상표법」을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4.11.06. 조례 제120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